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8. 11 선고 2020가단1291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 고 1. A

2. B

소송대리인 A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0. 7. 14.

판 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산청군 D 대 8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중 44.07㎡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 86.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회 변론기일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경남 산청군 E 대 533㎡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자였고, 피고는 경남 산청군 F, G 토지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산청군은 2018. 8.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경남 산청군 E 대 533㎡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2019. 5. 21. 위 E 토지 중 86.5㎡가 D 지번으로 이기되었고, 원고들은 E 대 446.1㎡ 및 D 대 86.5㎡ 토지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는데, 위 두 토지 면적의 합계는 기존 토지의 면적보다 0.4㎡ 적다.

다.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 D 대 8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44.07㎡가 소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 44.07㎡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44.07㎡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감정가격 내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툼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들 소유로 하는 새로이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미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경남 산청군 D 대 86.5㎡를 원고들 소유로 하는 경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감정가격 내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조정금 수수로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조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희

별지